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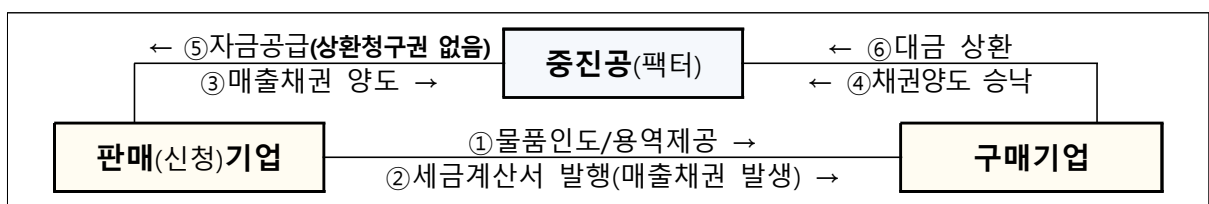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2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3월 31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

2022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

1. 사업 개요

- (목적)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
- (방식) 중소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‘상환청구권 없이’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



- * 판매기업 :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
- * 구매기업 :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

- (기대효과) ‘상환청구권이 없는’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
- 또한,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로 중소기업이 팩토링 자금을 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순환 체계 마련

2. 신청 및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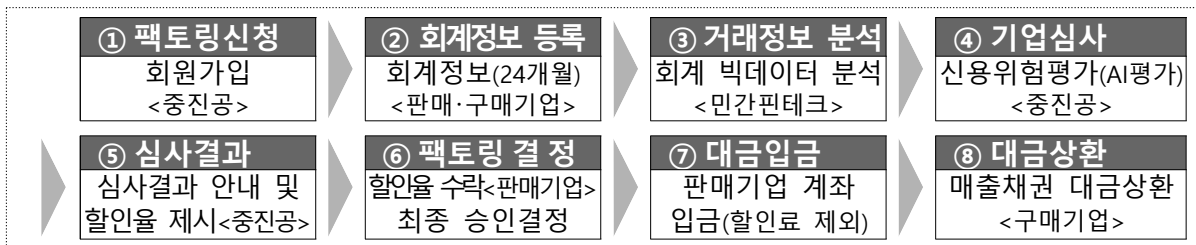
가. 지원대상 및 예산

- 신청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
 -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*를 보유하고,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**(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)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
 - *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**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(다. 팩토링 절차 ②를 참고)
- 대상채권 : 중소기업이 물품·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*
 - * 신청전월 1일 이후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(세금)계산서
 - *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예산규모 : 375억원

나. 신청접수

- 신청방법 :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를 통해 신청
- 신청기간 : '22.3.31 ~ 예산소진 시까지

다. 팩토링 절차



- ① (팩토링신청)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를 통해 회원가입 및 자가진단* 실시, 3개년 결산재무제표 등록

*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팩토링 신청제한

- ② **(회계정보 등록)**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* 등록 <판매기업·구매기업 모두 필요>
- * 회계정보 : 더존 회계프로그램 또는 한국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(세무사랑) 데이터
 - * 판매기업의 신청등록 후 구매기업의 승낙 필요 (양사간 사전협의 필수)
 - * 단, 구매기업이 대·중견기업, 유가증권·코스닥·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, 구매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가능
- ③~④ **(기업심사)** 중진공은 비대면 방식으로 매출채권팩토링 신청(판매) 기업 및 구매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
- *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+ 민간핀테크 보유 실시간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
 - * 대·중견기업, 유가증권·코스닥·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평가 가능
- ⑤~⑥ **(팩토링 결정)** 기업평가 이후 지원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산출하고, 신청기업이 할인율 수락 시 최종 팩토링 지원결정
- ⑦ **(팩토링대금 입금)** 중진공이 신청(판매)기업에 매출채권 원금에서 할인료(할인금액)를 차감하고 입금
- ⑧ **(팩토링대금 상환)** 구매기업은 팩토링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팩토링 대금상환

3. 팩토링 지원조건

가. 팩토링 한도 및 기간

- **(팩토링 한도)**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
 - * 단,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/3 이내 (제조업 1/2이내)
 - *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의 1/3 (회계정보 기준)
- **(지원기간)**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, 60일, 90일 중에서 신청 기업이 선택

나. 팩토링 할인율

- **(할인율)** 신용위험등급(구매기업), 매출채권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이 결정 (연 3.40%~4.55% 내외 예상)

다. 팩토링 제한기업

| 구분 | 적용 | 내 용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① | | 휴·폐업중인 기업 |
| ② | |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|
| ③ | |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|
| ④ | | 한국신용정보원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라 연체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|
| ⑤ | |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(별표)을 영위하는 기업 |
| ⑥ | 공 통 |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신청 -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-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|
| ⑦ | |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|
| ⑧ | |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|
| ⑨ | | 중진공 부실징후 기업 및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- 최근 3년 연속 '이자보상배(비)율 1.0미만'이고, 3년 연속 '영업활동 현금흐름이 (-)'인 기업 (단,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&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.5%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) |
| ⑩ | | 소상공인(단,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) |
| ⑪ | 판 매 기 업 |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가증권·코스닥 시장 상장기업, 「자본시장법」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(단,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) -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(CR1) (단,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 예외) -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|

4. 문의처

- 문의처 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☎ 1357),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☎ 1811-3655), 중진공 팩토링금융실(☎ 02-3211-5602~5)

※ 비대면 사업설명회 : 4.7(목), 14시 유튜브(중진공TV)를 통해 진행

<별표>

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*

| 업종 분류 | 산업분류코드 (KSIC) | 팩토링 지원제외 업종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제조업 | 33402 中 |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|
| | 33409 中 |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|
| 건설업 | 41 ~ 42 | 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3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 |
| 도매 및 소매업 | 46102 中 | 담배 중개업 |
| | 46331, 3 | 주류, 담배 도매업(단,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) |
| | 4722 中 | 주류, 담배 소매업 |
| 숙박 및 음식점업 | 5621 | 주점업 |
|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| 5821 中 |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| 정보서비스업 | 63999 中 |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(63999-1) |
| 금융 및 보험업 | 64 ~ 66 | 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 |
| 부동산업 | 68 | 부동산업 |
| 전문서비스업 | 711~2 | 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|
| | 7151 | 회사본부 |
| 수의업 | 731 | 수의업 |
|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| 84 |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|
| 교육서비스업 | 851~854 | 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|
| | 855~856 中 |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|
| 보건업 | 86 | 보건업 |
|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| 9124 | 갬블링 및 베팅업 |
| 협회 및 단체 | 94 | 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」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) |
|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| 97 ~ 98 |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|
| 국제 및 외국기관 | 99 | 국제 및 외국기관 |

※ 업종 : 국세청 업종 분류 코드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